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29호 2017. 11. 8.(수)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428호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429호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430호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431호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432호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사천시 조례 제1433호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7-207호 서포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 2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7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2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13. “군인”이란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제5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4.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의 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5. 사천시체육회 등록된 단체의 장 또는 협회(연합회)의 정기대회(연 1회)
 6.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 제18조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로 “제4호에 따른” 을 “그 외” 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5)

[별표 1]

사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1. 기본사용료

구 분 시설별	시 기	사용구분	기 본	사 용 료(원)		비 고	
				평 일	휴 일 (토요일포함)		
사천·삼천포 체육관, 사천시유도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12,000	15,000		
		체육이외	1회(일)	20,000	30,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50,000	60,000		
		체육이외	1회(일)	80,000	12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50,000		
사주체육관	조기	체육경기	1회(일)	6,000	7,000		
		체육이외	1회(일)	10,000	15,000		
	주간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체육이외	1회(일)	40,000	60,000		
	야간	체육경기	1회(일)	9,000	12,000		
		체육이외	1회(일)	25,000	35,000		
사천·삼천포 종합운동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120,000	15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60,000	250,000		
수영장 (실내)	1일	체육경기	1회(일)	300,000	500,000		
		체육이외	1회(일)	500,000	800,000		
읍면동지역 축구장	1일	축구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정동생활체육시설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80,000	100,000		
		체육이외	1회(3시간)	100,000	150,000		
사등야구장	1일	체육경기	1회(3시간)	30,000	50,000		
궁 도 장	1일(1사대)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인공암벽장	1일	체육경기	1회(일)	20,000	25,000		
풋 살 구 장	1일	체육경기	1회(2시간)	20,000	25,000		
테니스장	개인	인조 마사	체육경기	1회 2시간 1면당	7,000	8,000	※ 단 체 는 같은 동호 회나 같은 소속의 구 성원이 10명 이상인 경 우에 적용
				"	5,000	6,000	
	단체	인조	체육경기	1회 2시간 / 3면당	20,000	30,000	
				마사	1회 2시간 / 3면당	10,000	

2. 전용사용료(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축구장 등 대관 체육시설 구장별 적용)

사용시간별	사 용 료	비 고
연 20회 이내	○ 기본사용료 × 사용 회수	
연 2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9	10% 할인
연 30회 초과	○ 기본사용료 × 초과 회수 × 0.8	20% 할인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6)

3. 연습사용료

시 설 별	구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체육관, 유도체육관	개인	1회 2시간	1,0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종합운동장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초과 매시간당 사용료의 1/2
공도장	개인	1회 2시간	2,000원	1사대 기준
	단체	1회 2시간	1명당 800원	1사대 기준
인공암장	개인	1회 2시간	1,000원	
	단체	1회 2시간	1명당 500원	

※ 단체연습 : 3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앰프시설	1일 1회 (8시간내)	20,000원	종합운동장, 체육관, 유도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동시 적용
전기 및 조명	kw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10,000원
냉·난방	1일	기본료+실제사용료	기본료 30,000원

5. 수영장 이용료

구 분	이용자	개인(원)	단체(원)	비 고
개 인	일반인	4,000	3,500	○ 이용시간 2시간 ○ 단체 30인 이상 ○ 회원권 매월기준
	군인, 학생	3,500	3,000	
	어린이, 경로대상	3,000	2,500	
선수훈련	일반인	2,000		
	군인, 학생	1,500		
	어린이, 경로대상	1,000		
회 원	일반인	60,000		
	군인, 학생	50,000		
	어린이, 경로대상	40,000		
	체력단련실이용	10,000		
	월 강습료	10,000		
수영복 대여료	수모	1,000		
	수경	1,000		
	수영복	2,000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7)

6.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단위: 원)

시설별	월 회 원(일반인)		수시이용료 (일반인)	비고
	개인	단체		
실내체육관	30,000	20,000	2,000	단체는 10명이상
에어로빅장	30,000	20,000	2,000	"
탁구장	30,000	20,000	2,000	"
헬스장	35,000	25,000	2,500	"
골프장	100,000	80,000	4,000	단체는 5명이상

- 이용시간 : 1명 당 1회 2시간
- 단체는 같은 동호회나 같은 소속의 구성원을 말함
- 월 회원 매월 기준
- 사천시 거주자 우선

7. 중계 방송료

종 별	기 준	요 액	비 고
텔레비전 중계	1일	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라디오 중계	1일	10,000원	
녹화 또는 녹음	1일	중계방송료의 반액	

8.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 사용료

종 류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선전 또는 광 고물의 게시	게시면적		○ 1㎡ 미만은 1㎡로 한다. ○ 15일 미만은 2분의1월로 한다. ○ 15일 이상은 1월로 한다.
	1㎡당(월액)		
	1등급	8,000원	
	2등급	6,000원	
에드별론 및 유사물 계양 에 의한 행위	1일 1개	3,000원	○ 1등급 : 본부석 정면 위주로 한다. ○ 2등급 : 본부석 중심으로 좌우 위치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8)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액 또는 감면(제18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자 한명을 포함한다)	50%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	5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경로대상자(65세 이상), 어린이, 학생, 군인	5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우대인증카드를 소지한 사람 (우대인증발급일로부터 5년간 적용)	50%	수영장만 적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수업	50%	
다자녀가정(18세 이하의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	5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50%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5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10%	별표 1 수영장 이용료 별도적용

※ 그린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5% 추가 할인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9)

[별지 제1호서식]

체 육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	(전화번호 :)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체 육 시 설	시 설 명		참 여 인 원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사용시간	
부 대 시 설	라디오 중계		조 명	
	중 계		확성기 (마이크)	
	라디오 녹음		라 이 트	
	녹 화		난 방	
	경기(행사)촬영		냉 방	
	기 타			
관람료 및 입장료 발행내역	특 별 관 램 권	원	예매처 개소 매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개요
	일 반 관 램 권	원		
	군 경 학 생 권	원		
	초 대 권	원	대관사용료	
	일 반	원		
	군 경 .학 생	원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날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3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별표 13 중 시설물 제7호(공장)의 설치 기준 “시설면적 300㎡ 당 1대(시설면적/300㎡)” 를 “시설면적 350㎡ 당 1대(시설면적/350㎡)”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1)

[별표 1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신설>	시설면적 150㎡ 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50㎡ 당 1대 단, 숙박시설은 100㎡ 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 이하 :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 100㎡ 당 1대를 더한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 1타석 당 1대 옥외수영장 : 정원 10인 당 1대 관람장 : 정원 50인 당 1대
7.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350㎡ 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 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50㎡ 당 1대(시설면적/25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2)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두개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숫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한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한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3)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비고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4)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3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시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에 위탁함으로써 지방산업 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5)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④ 시장은 지방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업무를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없다.

-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 관리) ① 수탁자는 시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6)

제5조(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소형선부두 사용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물 중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협의회 회원으로서 연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 사천시가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수탁자가 소형선부두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사용료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감독) 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부분을 발견하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의 취소·정지)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8)

[별표 1]

산업단지 위탁업무(제3조제2항 관련)

구 분	위 탁 업 무	근 거
행정(민원) 업무	· 입주계약(변경)계약 체결 및 해지 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2조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임대 신고	법 제38조의2
	·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 신청신고	법 제39조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및 공장등록 업무	법 제15조
관리기본 계획수립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한함)	법 제33조
입주기업체 지원	· 종업원의 복지증진사업 · 교육·연수사업 · 기타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법 제44조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등 지도	· 입주기업체 안전관리 · 산업단지 환경관리 등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5조
공공시설 관리	· 산업단지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산업단지 도로, 공원 등의 환경정비 · 공동이용시설 점검 및 관리 · 관리청사 유지관리	법 시행령 제5조
지원시설물 및 공동시설물	· <u>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 소형선 부두 관리</u>	법 시행령 제5조
산업단지구조 고도화 등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 산업단지 간 연계활성화 사업 · 산업단지 정비사업 · 그 밖에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업무	법 제45조의 2 법 시행령 제5조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19)

[별표 2]

소형선 부두 사용료(제5조제1항 관련)

구 분	30분당 사용료	1일 상한선	비 고
회원사 및 비회원사	354,000원	2,000,000원	※ <u>사용시간이란</u> 소형선부두에 정박하여 선·하역 후 출항 시까지 시간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20)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3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신설 한다.

7. “항공우주산업” 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21)

제8조의2(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가 해외 수주 시 신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2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43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와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인상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에 따른 요금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7에 따른 요금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23)

[별표 2]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업 종	구간(m ³)	요율(원)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가정용	1~20	451	586	761	
	21~30	531	690	897	
	31 이상	742	964	1,253	
일반용	1~100	582	756	982	
	101~300	851	1,106	1,437	
	301이상	1,145	1,488	1,934	
대중탕용	1~500	496	644	837	
	501~1,000	676	878	1,141	
	1,001이상	882	1,146	1,489	
산업용	m ³ 당	479	622	808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지물, 철물 등의 소매업·부동산중개업·인장업·행정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등으로서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점술집 및 지압업소
일반용	○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하수
대중탕용	○ 일반 대중 목욕장업
산업용	○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된 사업장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2.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24)

[별표7]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20조제1항 관련>

※ 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구 분		부과기준	연도별 부과금액		
			2017년	2019년	2021년
수거식 화장실		10리터	170원	190원	210원
오수 및 정화조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6,650원	17,640원	18,63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240원	1,360원	1,480원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25)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7-207호

서포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서포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사 천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서포 비토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 : 서포 비토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청정어촌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
3. 사업비 : 500백만원

사 천 시 공 보

제529호(26)

4. 주요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세부사업	사업개요	사업비	비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합 계		500	
	소 계		300	
	비토빌 체험학교 조성	리모델링 : 366.8㎡	300	
지역경관 개선	소 계		50	
	비토빌 체험학교 경관 정비	건물철거 260㎡ 화단 및 잡목제거 1식 파고라 1개소, 벤치 5개소 등	50	
지역역량강 화사업	소 계		150	
	교육 및 홍보	교육 및 브랜드 개발 1식	100	
	부대비용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	50	

5. 사업시행자 : 사천시청

6. 사업시행기간 : 2017년 11월 ~ 2018년 12월(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비고
	읍면	동리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및 내용	
1) 비토빌 체험학교 조성												
1	서포	비토	30-1	학	2,093	2,093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2	서포	비토	27-5	임	962	962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2) 비토빌 체험학교 경관정비												
1	서포	비토	30-6	학	1,084	1,084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서포 비토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
(055-831-3135), 서포면사무소(055-831-5231)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